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 3. 4 선고 2021가단12693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피 고 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변 론 종 결 2022. 2. 18.

판 결 선 고 2022. 3. 4.

주 문

1. G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13 지분에 관하여 2019. 12. 27.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2. 피고들은 G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/65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0. 5. 13. 접수 제11020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

2. 근거

가. 피고 B, 피고 C, 피고 D, 피고 E : 자백간주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나. 피고 F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박형순

별지